

행정심판위원회 운영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,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업기간 2022.01 ~ 2022.12		
사업내용	○ 행정청 처분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며, 행정의 신뢰성 제고		
사업비 (당해년도)	276,198천원	[국비]	[사비]276,198천원
		기타 (예산 외) [구비]	[기타]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기획조정실	법무담당관	김희정 2133-6680	조희정 2133-6694	서준식 2133-6702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1예산액 (A)	2022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276,198	(x-) 276,198	(x-) 0	(x-) 0
사무관리비	(x-) 267,824	(x-) 267,824	(x-) 0	(x-) 0
시책추진업무추진비	(x-) 4,374	(x-) 4,374	(x-) 0	(x-) 0
기타보상금	(x-) 4,000	(x-) 4,000	(x-) 0	(x-) 0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2년 예산내역		
사무관리비	○ 위원수당	=	128,400천원
	- 회의주재위원	=	41,400천원
	1,380,000원*1명*30회		
	- 주부심위원	=	87,000천원
	580,000원*5명*30회		
	○ 장애등급판정 자문수당	=	72,000천원
	200,000원*10건*3명*12월		
	○ 속기료	=	24,000천원
200,000원*4시간*30회			
○ 심리안건 책자발간	=	25,824천원	
860,800원*30회			
○ 재결레집 책자 제작	=	5,100천원	
17,000원*300부			
○ 국선대리인 보수	=	12,500천원	
500,000원*25건			
시책추진업무추진비	○ 행정심판위원회 운영	=	4,374천원
	4,374,000원		
기타보상금	○ 중앙행정심판 비용 지원	=	4,000천원
	500,000원*8건		

3 사업설명

□ 사업목적

- 행정청 처분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며, 행정의 신뢰성 제고

□ 사업근거

- 행정심판법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,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
- 장애등급결정사건 행정심판 자문제도 개선 실행계획
-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

□ 사업내용

- 행정심판위원회 운영
 - 구 성 : 50명 이내[현원 42명(내부위원 5, 외부위원 37)]
 - 회의운영 : 매회 8명의 위원으로 구성

- 심판대상 : 서울시 소속 행정청(본청 제외, 직속기관·사업소 등) 및 자치구청장의 처분 및 부작위
 - 추진방법 : 위원회 정례 개최
 - 사업의 주요내용
 - 1) 일반사건 : 청구사건 접수 ⇒ 답변서 및 보충서면 등 송달 ⇒ 안전상정 ⇒ 심리안전 책자 제작 ⇒ 사건검토 ⇒ 회의개최 ⇒ 재결 ⇒ 검토수당, 회의수당, 속기료, 안전 제작비, 위원회 운영비,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
 - 2) 장애사건 : 청구사건 접수 ⇒ 답변서 및 보충서면 등 송달 ⇒ 병원 전문의에게 자문 ⇒ 안전상정 ⇒ 심리안전 책자 제작 ⇒ 사건검토 ⇒ 회의개최 ⇒ 재결 ⇒ 자문료 지급
- ※ 자문은 장애유형별 총 3명의 전문의에게 자문 의뢰

○ 행정심판 비용 지원

- 지원대상 : 서울특별시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전부 인용된 경우 당사자(청구인)에게 심판비용 일부 보상
- 지원금액 : 행정심판 청구사건 40만원, 집행정지 신청사건 10만원
- 지원방법 : 전부 인용 재결 시 당사자 통지 ⇒ 비용지원청구서 제출 ⇒ 지원금 지급

□ 추진경위

- 헌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보장된 제도로서, 행정심판법에 근거하여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설치·운영
-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(2018. 1. 4. 공포)에 근거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전부 인용 재결 시 심판비용 일부 지원

□ 2022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276,198	
행정심판위원회 운영	2022.01~2022.12	262,724	연간 24회 이상 개최
재결레집 책자 제작	2022.08~2022.11	5,100	2021년 책자 제작
시책추진업무추진비	2022.01~2022.12	4,374	
중앙행정심판 비용 지원	2022.01~2022.12	4,000	전부인용 청구인에게 심판비용 일부 지원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9년도	○ 행정심판위원회 24회 개최 - 재결건수 : 1,609건 처리(※ 장애사건 106건) ○ 2018년 재결레집 제작
2020년도	○ 행정심판위원회 27회 개최 - 재결건수 : 1,828건 처리(※ 장애사건 129건) ○ 2019년 재결레집 제작
2021년도	○ 행정심판위원회 18회 개최('21.9월말 기준) - 재결건수 : 729건 처리(※ 장애사건 96건) ○ 2020년 재결레집 제작 예정('21.11월)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소송과 달리 무료심리를 진행하며, 신속·간편한 절차로 시민 권리구제 향상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8	(x-) 259,464	(x-) 0	(x-) 0	(x-) 259,464	(x-) 220,075	(x-) 0	(x-) 39,389
2019	(x-) 283,464	(x-) 0	(x-) 0	(x-) 283,464	(x-) 241,073	(x-) 0	(x-) 42,391
2020	(x-) 294,464	(x-) 0	(x-) 0	(x-) 294,464	(x-) 251,762	(x-) 0	(x-) 42,702